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35호 2024. 3. 20.(수)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7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7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7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7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7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8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8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8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8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8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6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85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73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8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안 입법예고) 9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81호(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
보자 모집 공고(연장)) 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86호(2024년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추가신
청 공고) 103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하기관” 관련 내용 삭제(제1조, 제2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제7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함(제8조) ○ 위탁기간 명시(제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 을 “일부를” 로,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 를 “검토해야” 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 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야” 를 “선정해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을 “구청장은 제1항에” 로, “공개하여야” 를 “공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 적격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8조의 심사위원회” 를 “제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보하여야” 를 “통보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한다.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제8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을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을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지 말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받아야 한다”를 “받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할 수 없다”를 “위탁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할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취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의” 를 “사무의” 로, “위탁사업” 을 “위탁사무” 로, “실시하여야” 를 “실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 를 “위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 를 “공개해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일부를</u> ----- ----- ----- <u>개인에게 위탁하</u> <u>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u> <u>민간의</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민간위탁</u> ”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u>민간위탁</u> ”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 <u>수탁기관</u> ”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 <u>수탁기관</u> ”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 <u>산하기관</u> ”이란 「지방공기업	<삭 제>

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5. (생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

4. 5.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

----- 않는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 검토
해야 -----.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

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제1항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심사위원회

-- 선정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

----- 공개해야 -----.

③ -----
-----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 적격자 -----.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제8조-----

를 준용한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

----- 통보해야 -----.

----- 통지
해야 -----.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 구성하고, 해
당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 -----
-----.

③ ----- 의회 -----

----- 않도록
해야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

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 체결해야
--.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포함해야 -----.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

----- 준수해야 ---
--.

1. -----

----- 하지 말
것.

2. -----
----- 사용하지 말 것.

니 된다.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

3. -----

---- 이행할 것.

4. -----

----- 받을 것.

5. -----

---- 위탁하지 말 것.

6. -----

노력할 것.

제13조(사무편람) ① -----

----- 작성·비치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② (생략)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해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야 -----.

제18조(성과평가) ① -----

--- 사무의 -----

위탁사무----- 실시
해야 -----.

② -----
----- 위탁 -----.

③ -----
----- 공개
해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 및 타 조례와의 관계(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제5조) ○ 사회복지기관 장의 역할(제6조) ○ 지원계획의 수립(제7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제8조, 제9조) ○ 위원회 설치(제1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제3조) ○ 제6조의 제목 변경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6조, 제8조, 제11조~제13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제1조~제3조, 제5조, 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u>따라</u>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따른</u> ----- ----- -----.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u>기타</u>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u>·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u>	제2조(기능)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에서 <u>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u> 5. <u>그 밖에</u> ----- ----- ----- <u><삭제></u>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생략)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속 공무원

4. 구의회 의원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

----- 포함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 사람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삭 제>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임시

회의-----

----- 개최한다.

집한다.

③ (생략)

<신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5명 -----

③ -----

----- 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제2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제6조) ○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제9조) ○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함(제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8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
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하여야” 를 각각 “해야”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 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으로, “수립·시행하여야” 를 “수립·시행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 소속기관”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으로 한다.

제8조 중 “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한” 을 “관한 다음 각 호의” 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를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 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 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 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 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4. (생략)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 ----- 뜻은 -----.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요인 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 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5. ----- ----- 뜻은 ----- -----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② (생략)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유

해야 -----.

② -----

- 해야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노력해야 -----.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장애인차별금지 및 -----
----- 수립·
시행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

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 ① -----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

해야 -----.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

--- 관한 다음 각 호의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삭 제>

제11조(포상) -----

-----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조례상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 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제1조~제4조, 제8조, 제9조) ○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의2) ○ 노인 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7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 을 “노인”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연수구민” 을 “연수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으로,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를 “학대해서는 안 되며” 로,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을 “(예방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 을 “예방계획” 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를 “포함되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계획” 을 “예방계획” 으로 한다.

-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 “구축하여야” 를 “구축해야”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 을 “(사업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9조 중 “아니” 를 “안”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u>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u> 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노인</u>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1. <u>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u> 2. <u>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u> 3. <u>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u>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 <u>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u>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를 위한 사업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
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신 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4조(구민 등의 책무) -----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 학대해서
는 안 되며 ----- 노력해야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
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
----- 포
함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예방계획-----

-----.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
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 구축해야 -----.

제7조(사업 등) ①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

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력해
야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

 ----- 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정(제3조) ○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에 대한 규정(제4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 ○ 개방주차장 관리 및 안내표지에 대한 규정(제6조, 제7조) ○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8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2.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②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비

- 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 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 라. 주차편의시설 보수

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개방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0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개방유형	☐ 시설개선 ☐ 단순개방				
개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방면수	면 (옥내 면, 옥외 면, 기타 면)				
개방시간	○ 평 일 : ○ 토 요 일 : ○ 공 휴 일 : * 요일별, 시간별, 실정별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관계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서면동의서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제3조, 제4조) ○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제5조)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제6조)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등(제7조) ○ 환경감시단 구성 등(제8조) ○ 악취 정보공개(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8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사업장 인근 구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악취방지 추진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수가 많지 않고 규정 내용의 성질이 구별되지 않아 장(章) 구분 삭제 ○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정의 정비(제2조제1호)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제2조, 제6조, 제9조) ○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은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조항 삭제(제3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강화(제5조)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해 협조요청 대상 확대(제11조) ○ 포상 근거 조례 명시(제1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8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을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u><삭 제></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 다음과</u> ----- -----.
1. “ <u>녹색제품</u> ”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 <u>녹색제품</u> ”이란 「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 <u>관내기업</u> ”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u>구</u>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 <u>이란</u> -----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이하 “ <u>구</u> ”라 한다)----- -----.
3. “ <u>자발적 협약</u>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 <u>이란</u> ----- ----- ----- ----- ----- -----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기관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

<삭 제>

<삭 제>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3. (생략)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 공표해야 -----.

② -----
-----.

1. -----
----- 녹색제품 -----

2. 3. (현행과 같음)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② (생 략)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
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 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
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 ·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

 ----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
구 포상 조례」에 따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1조~제3조) ○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등(제4조, 제5조) ○ 정산 및 지원 중단 사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제6조~제8조) ○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제9조~제1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8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법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법대 · 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방법대명	_____자율방법대	총인원	명
	방법대장		연락처	
신청내역	신청금액	금 원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직위 :)		
사업내용	사업명	자율방법활동		
	초소위치	(연락처 :)		
	순찰지역			
	시설·장비			
	설립연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법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법대 운영현황 1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법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m ²)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0000년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금 액	사 유
		- 집행잔액: - 이자수입: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지출결의서

제000호	결재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 .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출내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명 : ○ 일자 : 20 . 00. 00.(0요일) ○ 금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조장	방법대장

○○자율방범대 · 연합대 방법일지

20 년 월

순찰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월 일 (요일) 00:00 ~ 00:00	00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지원계획(제5조) ○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제6조, 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8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학습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4. 2. 17. 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등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의무 부여(제2조제1항) ○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제7조제2항)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제12조)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제13조) ○ 주민조례청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사항에 청구권자 확인 사무와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추가 규정(제14조) ○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 서식 정비·보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진 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8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권자”를 “청구권자”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을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청구권자 수)”를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경우에”로, “공표한”을 “공표된”으로,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고, 이를”을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 등)”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을 “따른”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청구”를 “청구조례명, 청구”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을 “의장이”로,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을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으로,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취지”를 “청구조례명, 청구취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제9조 중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를 “구보, 의회 및 구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람은”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를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15일”을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을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

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모두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 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수리·각하 결정 기한이 지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u>주민조례청구권자</u>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u>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 ----- ----- ----- <u>청구권자</u> ----- ----- ----- ----- <u>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u>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u>
제3조(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u>경우 연대</u>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 ----- <u>경우에</u> -----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략)

----- 공표된 -----
----- 이상이 연
대 서명해야 한다.

② -----

---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
의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
- 따른 -----
----- 증명서의 발급신청
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후단 삭제>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 의장-----

-----.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4. (생략)

제7조(청구인명부) (생략)

<신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략)

2. 청구취지 및 이유

3. 4. (생략)

5. 이의신청 방법

② (생략)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2. 청구조례명, 청구--

3. 4. (현행과 같음)

제7조(청구인명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현행과 같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

3. 4. (현행과 같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표 방법) -----

----- 구보, 의회 및 구 누리집 -----

-----.

제10조(이의신청) ① -----

----- 사람은 -----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 설>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
-----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
-----.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에 대한 심사·결정이 모두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
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제
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
사·결정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
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
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
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
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
다.

제13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대표

<신 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
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
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사무협조) ----- 주민조례발
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
기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
자 확인 사무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
음)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
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 - 48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를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8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조례로 지원하는 일부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고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구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3. 주요내용

-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 선택예방접종 추진계획의 수립 추가
- 지원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수정
- 준용 및 시행규칙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13 (청학동, 연수구보건소)
- 연락처 : 전화 032-749-8003, FAX 032-749-8059
- E-mail : kuduskj@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첨부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횟수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일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예방접종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할 것
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예방접종을 신청할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할 것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사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접종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구분	☐ 일반 ☐ 차상위 ☐ 수급자				
	접종명		접종일		접종기관	
	지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신청인	성명			관계		
	연락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자격조회, 예방접종내역 등록 등과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신청자(접종대상자)의 신분증 1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3. 신청자(접종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첨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연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시지정문화재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2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1」 보수정비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후보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전문성 있는 후보자의 많은 참여 및 지원 바랍니다.

2024. 3. 18.

연수구청장

I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3. 8.(금) ~ 3. 21.(목)
-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 (평가위원 수의 3배수)
- 모집분야 : 문화재보존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등 문화재 관련 분야
※ 신청서 “전문분야” 란에 위 모집 분야 중 1개 필히 명기
- 응모자격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제외자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서 접수 후라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명단에서 제외
- 예비위원 신청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4. 3. 8.(금) ~ 3. 21.(목) 18시까지
- 나. 접수장소 :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진흥팀 (☎ 032-749-7303)
- 다.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로 발송), 전자우편 ※ 일반우편 및 팩스 불가
- 공문 수신처 : 연수구 문화관광과
 - 전자우편 : moonkove99@korea.kr (원본스캔본 PDF파일 1부로 병합하여 첨부)
- ※ 2024. 3. 25.(월)에 예비위원 접수확인 문자 보낼 예정, 반드시 접수유무 확인 바람
- 라. 제출서류 (자격 증빙서류 등)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서식1)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처리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2, 서식3)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 필요 서류
- ※ 타 기관 제안서 평가위원 경력 증빙자료 제출 사절

II 평가위원 선정 및 개최

1. 평가위원 선정 : 2024. 4. 2.(화) (예정)
2. 선정인원 : 9명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후보 2명 추가 선정)
3. 선정방법
 - 가. 입찰참가업체가 추첨하여 선정
 - 나. 선정순서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 다. 선정결과 알림 :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통지(명단 비공개)
 - ※ 선정 위원과 연락 두절 또는 불참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선정
4. 제안서 평가일시 : 2024. 4. 12.(금) 14:00 연수구청 본관 6층 더 공감
 -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으로 봄.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보안 엄수 요망
 - 라. 참석위원에게는 연수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참석수당 지급
 -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진흥팀 【담당자 : 도문숙 (☎ 032-749-7303)】으로 문의 바람.

「2024년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

우리 구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으로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접수기간 : 2024.3.20.(수) ~ 2024.3.29.(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 지원 제외 대상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 신청내용 :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 지원대상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
-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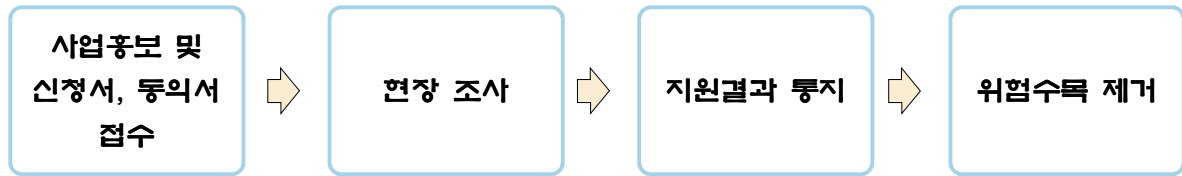
-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가지치기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신청 및 소유주·세대원 동의서 미확보 대상지는 제외됨
-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목처리 중 민원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예산 범위에 따라 신청 접수 후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동의서 등)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제출

○ 접 수 처 : 연수구청 4층 공원녹지과

○ 선정결과 :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후 신청자 문자 혹은 유선통보

▶ 추진절차



- 접수된 수목 현장조사 확인 (위험도에 따라 심(深)·중(中)·경(輕) 으로 구분)
- 위험도가 높은 수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보예산 범위 내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문의 :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최용락 주무관 (☎032-749-8694)